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質疑를 해주시고 企劃管理室長께 精確한 答辯을 듣도록 그렇게 運營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1項, 2項, 3項에 대한 內容에 대해서 委員 여러분께서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李敏國委員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다루었던 問題 한 번 짚고 넘어가고 本 條例案 通過를 만져보자 이러한 얘기입니까?

○委員長 朴尙東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일괄 上程된 條例改正案 2件 等 3個項을 處理하고, 바로 지난 번 市政報告를 들으시고 그 內容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上程된 案件을 일단 處理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條例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件 한件 處理하십시오」하는 委員 있음)

네, 그러십시오.

아마 質疑하실 委員님들이 안 계시는데 일단 한件 한件, 上程된 案件을 하나 하나 處理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公務員職務發明補償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滿場一致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 30만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保健環境研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滿場一致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연구소법”을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제2조”를 “제5조”로, “보건연구소”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각종 시험·조사·연구 및 검사”를 “보건·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연구”로 한다.

제3조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전염성 질환과 집단질병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

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수처리제·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난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악취,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토양·농약잔류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보건소등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 제1항중 “지방공업연구관”을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있습니까?

○李敏國委員 네.

○委員長 朴尙東 네, 李敏國委員님 말씀하시

지요.

○李敏國委員 15人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人 中에 公務員 9名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3名 정도를 더 縮小시키는 것이 正當性이 附與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나 하면 公務員 숫자를 9名에서 3名을 縮小하면 6名…….

○委員長 朴尙東 왜 그렇게 3名을 縮小해야 되는지 충분한 理由를 說明을 해 주세요.

○李敏國委員 그 理由는 역시 委員長은 副市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相似가 되고 또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어떠한 議案 通過도 異議를 提起하기가 艱難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公務員 數를 3名을 縮小해서 一般職으로 놓는 것이 좋다고 思料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러시면 그 內容에 대해서……. 15名 構成을 해야 할 理由, 그 다음에 李敏國委員이 質疑한 內容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名을 縮小해도 財政計劃審議委員會 構成에 어떤 큰 瑕疵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李敏國委員의 質疑에 대한 內容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15人 以內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몇 사람 縮小하는 것은 큰 問題는 없습니다. 問題는 없는데, 요는 財政計劃審議委員會라는 그 條例案 명칭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委員이, 여기에 꼭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局長만 委員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投資管理官, 內務·財務·都市·道路·交通 이것은 서울市政을 떠나가는데 있어서 投資計劃과 가장 긴밀한 關聯이 있는 그러한 機能을, 主機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局長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이 무슨 議決權을 行事하기 위한 그러한 役割을 가지고 이 자리에 參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上程하고 자기가 投資해야 되겠다 고 판단되는 對象事業에 대한 그러한 명확한